

배우자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Greenbook 정책을 중심으로-

김 잔 디*

목 차

- | | |
|---------------------------------|-------------------------|
| I. 서 론 | 2. Greenbook의 성립경위 |
| II. 가정폭력의 실태와 지원체제의 문제점 | 3. Greenbook의 의의와 내용 |
| 1. 가정폭력의 개념 | 4. Greenbook의 효과 |
| 2. 가정폭력의 현황 | IV.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
| 3. 지원체제의 문제점 | 대안 |
| III. 미국의 'Greenbook Initiative' | V. 마치는 말 |
| 1. 'Greenbook Initiative'의 배경 | |

I. 서 론

가정의 행복은 건전한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개인에게 가정이란 사회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사회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경험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정 내에서 구성원에 의하여 폭력을 당한 경험은 인간에게 매우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인격형성·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가정 파탄을 유발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내연 혹은 동거관계(17.4%)',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배우자(16.5)'였다.¹⁾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뿐

* 大阪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 博士課程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배우자(intimate partner)에 의해 살해된 건수는 2000년 1,247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고 한다.²⁾ 일본의 경우에도 전체 살인건수 중에서 친족 간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49.8%, 2010년 48.1%, 2011년 52.3%³⁾로 약 절반 정도가 친족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⁴⁾ 아동, 노인 등이 폭력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만성후유증을 호소하고,⁵⁾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인격형성에 영향⁶⁾을 미쳐 폭력적인 성격이 될 위험성이 있다.⁷⁾ 이하에서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
- 1) 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46-147쪽.
 - 2) Callie Marie Rennison, "Intimate Partner Violence 1993-2001"(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03), 2쪽 :
<http://bjs.ojp.usdoj.gov/content/pub/pdf/ipv01.pdf>, 검색일 : 2012.8.25.
 - 3) 法務省, 犯罪白書2009(2009), 173쪽/法務省, 犯罪白書2010(2010), 188쪽/法務省, 犯罪白書2011(2011), 177쪽.
 - 4) 일본의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가정폭력의 문제로 경찰에 상담한 건수는 총 16,888건으로 그 중 남성은 2.4%, 여성은 97.6%였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 5) 日本DV防止・情報センター,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第4版(解放出版社, 2008), 23-25쪽.
 - 6) 아동 시기에 경험한 가정폭력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남재성,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제5권 1호(대한범죄학회, 2011); 신선인,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23권(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8); 박은하/권세원,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한국청소년학회, 2010) 등이 있다.

보고, 기존의 가정폭력지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우자폭력·아동학대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Greenbook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가정폭력의 실태와 지원체제의 문제점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에 대하여 과거에는 범죄가 아닌 가정사로서 취급하여 왔지만 최근 사회문제로서 그 심각성이 인정되어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심한경우에는 살인에 이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일본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그에 준하는 심신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⁹⁾이라 정의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아동에 대해 현저한 폭언 또는 거절적인 대응,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주는 것에 준하는 심신의 유해한 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¹¹⁾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7) Hon, Diane Kiesel, *Domestic Violence: Law, Policy, And Practice* (LexisNexis, 2007), 691-695쪽.

8) Lyn shipway, *Domestic Violence: A Handbook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Routledge, 2004), 1쪽.

9)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1条.

10)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第二条の4.

위¹²⁾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일관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위를 폭력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물리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에서 행해질 때 이를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라고 한다.¹³⁾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란 ①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②형법의 유기와 학대의 죄, ③형법의 체포와 감금의 죄, ④형법 협박의 죄, ⑤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⑥명예에 관한 죄, ⑦ 주거침입에 관한 죄, ⑧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⑨사기와 공갈의 죄 중에 일부를 정하고 있다.¹⁴⁾

〈표 1〉 가정폭력의 유형¹⁵⁾

대상 \ 형태	신체적 폭행	성적 폭행	정서적 폭행	기본욕구의 충족실패
아 동	벌주는 폭행, 또는 신체적 학대	아동 성적학대	아동 심리적 폭행 또는 학대	아동방임
배우자/가족동반자	아내구타	배우자 강간	심리적 폭행 또는 학대	

위의 표는 가정폭력의 유형을 형태와 대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행위도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2에 의하면 가정구성원이란 ①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1.

13) 김운희, 가정폭력범죄 :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백산출판사, 2008), 19-23쪽.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3.

15) 김운희, 앞의 책, 23쪽.

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2. 가정폭력의 현황

2.1 배우자폭력의 실태

2009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배우자 폭력률은 65.6%로 나타났고, 그 유형은 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학대, 방임 및 통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폭력의 유형중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간주되는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분석결과 16.7%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부부 6쌍 중에서 1쌍이 1년에 한번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당한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통제 발생률은 48.8%, 정서적 폭력 발생률은 42.8%, 방임행위는 30.5%, 성적학대 발생률은 10.4%, 경제적 폭력 발생률은 10.1%로 나타났다.¹⁶⁾

〈표 2〉 연도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배우자폭력 발생률 비교¹⁷⁾

단위 : %(명)

연도\구분	배우자 폭력률	신체적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학대	방임	(분석 대상수)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2004년	44.6	15.2	4.8	15.7	42.1	-	7.1	-	5,916
2007년	40.3	11.1	4.8	11.6	33.1	4.1	10.5	19.6	6,561
2010년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2,423

주) 2007년, 2010년 조사에서 부부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한편 2004년의 경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임.

16) 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2010), 103쪽.

17) 여성가족부, 위의 보고서, 105쪽.

<표 2>는 배우자간의 폭력 발생률을 조사한 것으로서 2004년도, 2007년도, 2010년도를 비교한 것이다. 2004년도에는 배우자 폭력에 경제적 폭력과 방임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배우자폭력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07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 배우자 폭력률은 13.5% 증가했다.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4.1% 증가, 정서적 폭력 9.7% 증가, 경제적 폭력 6% 증가, 방임 10.9% 증가 하였고, 성 학대는 0.1% 감소로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자의 결혼 이후 평생 동안의 배우자 폭력 발생률은 54.3%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23.5%로 우리나라 기혼남녀 약 4명당 1명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신체폭력을 가하거나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폭력은 50.7%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적 폭력은 13.9%, 성적학대는 13.5%로 조사되었다.¹⁸⁾

2.1.1 아동학대(자녀학대)의 실태

<표 3>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자 중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1,523명을 대상으로 자녀학대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녀학대가 발생한 가정은 전체의 59.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자녀학대의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 52.1%, 신체적 폭력 29.2%, 자녀에 대한 방임은 17%로 나타났다.

〈표 3〉 아동학대(자녀학대) 발생률¹⁹⁾

단위 : %

구분	자녀학대율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전체발생률	59.1	28.2	7.9	29.2	52.1	17.0

주)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결과임

18) 여성가족부, 위의 보고서, 105-106쪽.

19) 여성가족부, 위의 보고서, 154쪽.

위에서 살펴본 통계조사를 통하여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16.7%로 부부 6쌍 당 1쌍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배우자간의 폭력이 행해지고 있고,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29.2%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3가구 당 1가구에서 적어도 한 번은 자녀에 대하여 신체상의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지원체계의 문제점

배우자간의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이 있을 때 아동에게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가할 확률은 낮지 않다. 외국의 조사연구들에 따르면 표본과 조사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중복구타 현상의 규모는 가정폭력의 50%~60%²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²¹⁾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쉼터 피해자들의 상담기록을 토대로 가정폭력의 중복현상을 추정한 바에 따르면 실제 배우자 폭력과 자녀학대의 중복성은 62.4%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²⁾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

20) 일본에서 2003년 행해진 동경부 생활문화국의 ‘배우자등폭력피해자의 실태와 관계제기관의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중 아동에 대해서도 폭력이 있었다고 대답한 경우가 51%있었고, 그 폭력의 내용은 신체적 폭력, 폭언, 정신적폭력 등이 있었다: 尾崎 万帆子,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と児童虐待が同時存在する家庭への機関連携施策について”, 常磐大学大学院学術雑誌(常磐大学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 2008), 18쪽.

미국의 경우도 조사방법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즉 30%~60%라고 보고한 책으로는 Hon. Diane Kiesel, 앞의 책이 있고, 30%~50%로 보고한 논문으로는 Jaffe, P./D. Wolfe/S. Wilson, *Children of battered women* (Sage Publications, 1990)/Straus, M.A./R. Gelle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J: Transaction, 1990) 등이 있다. 즉 가정폭력의 중복발생률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는 없지만, 종합해보면 30%~50%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21)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47~48쪽.

22)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9쪽.

생에 관하여 미국²³⁾이나 일본²⁴⁾에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국내연구의 경우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고, 가정폭력피해의 조사 역시 여성, 아동 등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여성가족부 주체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의 각각의 발생률과 변동률에 대하여 보고·분석할 뿐 양자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역시 아동학대의 실태와 피해아동의 주요 특성은 분석되어 있지만 아동학대가정의 가정폭력 변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여성상담사례들을 분석한 몇몇 연구결과들이 포함하고 있는 중복발생 집계(대략 50%–60%)를 근거로 국내의 중복 발생률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²⁵⁾

가정폭력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해당 사건만을 중심으로

23) 미국의 가정폭력 중복문제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Strauss M. A./Gelles R. J.,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1990)/ Appel, A. E./G. W. Holden., "The co-occurrence of spouse and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1998)/ McCloskey, J.A., "The medea complex among men: the instrumental abuse of children to injure wives", *Violence and Victims* 16(1)(2001)/ Mbilinyi, L./J. Edleson/A. Hagemester/S. Beeman., "What happens to children when their mothers are battered? results from a four city anonymous telephone surve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5)(2007) 등이 있다 : 정혜숙,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3호(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85–86쪽.

24) 일본의 가정폭력 중복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후생노동과학연구(아동가정종합연구사업)의 DV피해자에 있어서 정신보건의 실태와 회복을 위한 원조의 연구(2002)/ 동경부 생활문화국의 배우자등폭력피해자의 실태와 관계제기관의 현황에 관한 조사(2003)/ 내각부남녀공동참화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배우자등으로 부터의 폭력에 관한 조사(2004) 등이 있다.

25) 정혜숙, 앞의 논문, 83–85쪽.

하여 사건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야를 넓혀서 중복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사건조사를 진행하여 잠재되어 있는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현재 경찰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80%이상의 사건들이 ‘아내구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내구타’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등 다른 사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위해 가정 내 폭력의 중복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과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²⁶⁾

또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학대행위가 가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폐쇄된 작은 집단에서 배우자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폭력의 영향은 비단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즉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이 존재하는 경우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²⁷⁾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충격은 부모에 의해 직접적인 학대를 받는 것과 유사한 충격을 줄 수 있다.²⁸⁾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본의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학대를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는 물론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까지 그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²⁹⁾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26) 김은경, 앞의 책, 48쪽.

27) 구체적으로 외현화 된 문제로는 학령 전 아동의 경우 부모 상호간에 폭력이 있을 때 행동문제의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아동과 사춘기 소년의 경우 발달상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내재화된 문제로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우울·불안 등을 수반할 수 있다. 또한 부부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비폭력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사회적 능력이 보다 낮았으며 사회적 능력에 보다 많은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Javad H Kashani/Wesley D.Allan, 조미숙 옮김,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21세기사, 2005), 73-77쪽.

28) Melissa J. Doak,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GaleGroup, 2011), 1쪽.

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일본과 같이 배우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우 아동학대의 해당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는 각 기관들의 협력체제의 미비이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관 즉 법원, DV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복지기관 및 커뮤니티의 긴밀한 교류와 연계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계기관들 사이에는 현실적인 긴장감이 존재하므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력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력은 각 기관들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시너지효과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극복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들의 협력체제구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9) 아동학대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의 ‘아동학대’는 보호자(친권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후견인 그 외의 자로서 아동을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함))가 그 감호에 관한 아동(만18세 미만)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 一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 二 아동에게 외설적 행위(わいせつな行為)를 하거나 아동에게 외설적 행위를 시키는 것.
- 三 아동의 심리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것과 같이 현저히 감식 또는 장기간의 방치, 보호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전 항목 또는 다음의 항목에 기재된 행위와 같은 행위의 방치 그 외의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현저히 해태하는 것.
- 四 아동에 대한 현저한 폭언 또는 거절적인 대응,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폭력(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자도 포함)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그에 준하는 심신의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동을 말함) 그 외의 아동에게 현저히 심리적 충격을 주는 언동을 행하는 것.

Ⅲ. 미국의 ‘Greenbook Initiative’

1. ‘Greenbook Initiative’의 배경

Effectiv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Case: Guidelines for Policy and Practice의 줄임말인 ‘Greenbook Initiative’ (이하에서는 ‘Greenbook’이라고 함)는 DV와 아동학대에 대응하여 온 기관들에 초점을 맞춰 DV와 아동학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를 명기해 둔 것이다. 이하에서는 Greenbook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1 DV와 아동폭력의 역사와 대처방안

미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DV관련법이 제정되어 왔지만, 그 이전의 법적시스템은 DV를 용인하고, 사실상 조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20년 Bradley 사건에서 “남편은 적당한 방법으로 아내를 신체적으로 징계할 합리적 권리가 있고, 그 경우 남편은 불법한 신체접촉(assault and battery)으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1876년 Flughum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를 신체적으로 징계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후 1876년부터 1906년까지 몇 개의 주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법집행기관은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인해 DV에 관여하기를 꺼려했고 이에 다수의 DV피해여성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여러 단계에서 원조를 거부당하였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던 중 1960년대에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은 “학대당한 여성들의 운동”(Battered women’s movement)을 계기로 전 미국각지에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긴급히 피난하는 장소인 쉼터(shelter)

가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DV에 대응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각 州에 법이 제정되었다. 연방정부의 레벨에서는 1994년 범죄방지법의 제4편에 ‘여성에 대한 폭력금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이 성립하였고 그것에 의해 미국연방정부는 본격적으로 DV에 대한 대처를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州에 따라 시책이 달랐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³⁰⁾ 미국이 아동학대를 대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³¹⁾ 과거 아동을 소유물로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아동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州들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개설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고 통일되지 않은 형식에 그쳤다. 그러던 중 1974년 연방정부는 “아동학대 및 방임(neglect)에 대한 전국 센터”(the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VCAN)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고,³²⁾ 그 일환으로 각 주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발견·확인, 방지 및 대처조치의 실증실험프로그램을 조성하는 연방보조금프로그램을 정한 ‘아동학대의 방지 및 대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현재 미국의 아동학대대응의 중핵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DV와 아동학대는 연방정부 수준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양자의 밀접한 관계와 중복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면서 DV피해자와 아동학대피해자의 지원

30) 小島 妙子, 도메스티ック·바이올런스의法-아메리카法と日本法の挑戦-(信山社出版, 2002), 75-89쪽.

31) 1960년대에 들어서서 아동의 학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변화를 거치게 된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Kent v. (1966)와 Gault(1967)이다 : Inger J. Sagatun, *Child abuse and the legal system* (Nelson-Hall Pub, 1995), 9쪽.

32) Inger J. Sagatun, 위의 책, 10-11쪽.

에 대하여 보다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되었다.

1.1.1 가정폭력의 중복가능성과 그 대책의 필요성

미국에서는 1990년 초반부터 DV와 아동학대는 동일한 가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에 대하여 자주 지적되어 왔다. Janet Carter는 DV와 아동학대에 대하여 “하나의 가정폭력(Family violence)이 존재한다면 다른 종류의 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동이 배우자간의 폭력을 목격한 충격은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받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였다.³³⁾ 또한 아동보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아동이 살해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가정의 40%는 DV가 존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요인으로서 DV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험한 환경의 아동 연구(study of at-risk children)”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진료기록을 토대로 실시한 Stark와 Flitcraft의 연구에서는 “매년 대규모의 병원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의 사건 중 45%가 母(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아내)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약 3배 높다고 조사되었다.³⁴⁾ 아동학대와 DV의 중복성은 가족, 여성,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는 법원, 아동·가족지원기관의 영역에서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V(혹은 배우자 폭력)

33) Janet Carter,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and Youth Violence: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2005) : <<http://www.mincava.umn.edu/link/documents/fvvpf2/fvvpf2.shtml>>, 검색일 : 2012.8.20.

34) Hon, Diane Kiesel, 앞의 책, 782-784쪽.

35)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The Greenbook Initiative Final Evaluation Report* (2008), 1-2쪽.

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양자는 많은 연관성·중복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나 이념, 실무상의 이유로부터 이러한 기관의 대응은 독립하여 행해져 왔기 때문에³⁶⁾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Greenbook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2. Greenbook의 성립경위

각 주마다 다른 법률로 정해진 DV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각 기관들은 설립경위, 운용하는 이념이나 업무내용,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다르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얻은 정보의 비밀엄수의무를 둘러싼 문제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각 기관의 긴밀한 연계는 DV피해자 및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되었고,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의 연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지적되어 이를 계기로 학대당한 아동도 DV피해자도 함께 지원하고 전체의 가족을 폭력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협력 체제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법집행기관이나 아동복지기관, DV피해자지원기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가정폭력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DV 및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된 “소년·가정법원판사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 NCJFCJ)”가 설립되었다. NCJFCJ는 우선 법원이나 사회복지기관, 법집행기관, DV피해자지원기관, 학회 등에 걸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200개의 추천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한 35개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것이 1998년 발행된 “Family Violence : Emerging Programs for

36) 尾崎 万帆子, 앞의 논문, 20-21쪽.

Battered Mother and Their Children”이다. 그리고 이어서 NCJFCJ가 법원, 아동복지기관, DV피해자지원기관, 연방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모아 1999년 드디어 “Effectiv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Case:Guidelines for Policy and Practive(Greenbook)”를 발간하게 되었다.³⁷⁾

3. Greenbook의 의의와 내용

각 기관의 시범사업인 Greenbook은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권고정책과 수행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지원한다. 지정된 사법권 내에서 Greenbook은 배우자폭력피해자와 그 아동에게 안전 및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DV피해자지원기관, 아동복지기관, 법원,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의 협력 정책과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권고하고, 안전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시스템의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³⁸⁾ 이와 같이 Greenbook은 독립적으로 DV와 아동폭력에 대응하여 온 각 기관들이 가정에서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과 DV의 중복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Greenbook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정, 행복, 안전 및 폭력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위한 전체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도 계속

37) 尾崎 万帆子, 위의 논문, 21쪽.

38) U.S.Department of Justice, *The Green Book Demonstration* (2001) :
(<https://www.ncjrs.gov/pdffiles1/les1/ojjdp/fs200121.pdf>), 검색일 : 2012.8.20.

되는 원칙들은 중복으로 이루어진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전개된다. 제3장, 제4장 그리고 제5장에서는 각각 아동보호체제, DV 피해자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법원에 대한 특별한 권고에 초점을 맞춘다. 각 장에서는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총 16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이 되는 원칙은 “원칙 1 : 커뮤니티의 리더 및 관계기관들은 DV 피해자 및 아동학대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커뮤니티는 가해자에 대해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폭력을 멈추기 위한 법적 중재,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이고, 그 외에도 독립하여 DV와 아동학대에 대응해 온 각 기관들에 초점을 맞춰 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에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한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Greenbook에서는 이러한 원칙하에 다수의 권고(recommendation)를 정하고 있다. 이 권고들은 원칙에 기초로 하여 세부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각 관련기관의 책무에 대한 기술이나 기관 내 혹은 기관간의 대응·개선방안의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고, 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에 대한 협력적인 지원 등을 제언하고 있다.

4. Greenbook의 효과

Greenbook이 발표된 후 권고를 받아들여 권고를 실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0년 12월 및 다음해 1월에 90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미국 연방사법부와 보건사회복지부는 커뮤니티의 한계, 유연성을 고려하고 권고에 대처해 온 비전이나 결단, 자원을 검토한 후에 6개의 실증 커뮤니티³⁹⁾를 선발하였다.⁴⁰⁾ 이 6개의 커뮤니티(이하에서는 커뮤니티라고

39) 여기서 6개의 커뮤니티는 EL Paso County, Colorado; Grafton County, New Hampshire; Lane County, Oregon; San Francisco County, California;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and St. Louis County, Missouri이다.

함)는 3년간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Greenbook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각 커뮤니티는 개개인의 가족이나 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관간의 협력이나 가정폭력의 동시존재의 확인, 정보의 공유, 가해자의 책임, 지원방법의 개선 등에 대하여 넓은 분야에 걸쳐 가정폭력에 대처하였다. 이하에서는 커뮤니티들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개선사항과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관계기관의 협력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어떤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한 개의 기관은 발생한 현상 자체에만 대처할 수 있지만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하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⁴¹⁾ 다수의 관계기관의 협력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의 요구와 바람직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다.⁴²⁾ 이처럼 관계기관의 협력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해를 극복·보완하고, DV 피해자와 아동학대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의 길을 열어 주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40)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The Greenbook Initiative Final Evaluation Report(2008), 5쪽: <http://www.thegreenbook.info/documents/FinalReport_Combined.pdf>, 검색일 : 2012.8.19.

41) Gomez, M. N./de los Santos, A. G., *Building bridges: Using state policy to foster and sustain collaboration*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1993) :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앞의 보고서, 11쪽에서 재인용.

42) Miller, C./Ahmad, Y.,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An effective response to complexity and fragmentation or solution built on s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0(5-6)(2000), 1-38쪽 :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앞의 보고서, 11쪽에서 재인용.

Greenbook은 계획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힘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 단계에서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많은 문제에 대면하게 되었다. 각 기관의 다른 이념이나 조직구조, 비밀엄수의무, 상호에 대한 이해 등이 협력관계 구축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멤버 개개인의 생각을 양보하는 것으로 권한의 균형을 찾고, 둘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셋째 각각의 기관의 발언권이나 힘의 균형을 맞추고, 넷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협력체제 구축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멤버들은 “피해자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큰 주의를 요구하지만, 이 부분이 업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였다.⁴³⁾ 그리고 커뮤니티는 Greenbook 시행 초기부터 경험한 시행착오를 토대로 성공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⁴⁴⁾

4.1.1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이 행해진 가정에서는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는 미국에서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에 의해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 등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Greenbook 정책의 개시시점에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에 대한 선별과 평가(Screening and Assessment)를 위한 경찰·병원·DV피해자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피해자 자신의 신고에 의한 아동학대와 DV의 동시존재는 아동복지기관에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각각의 커뮤니티의 복지기관내의 선별 및 평가기준은 실질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절반정도의 커뮤니티만 공식

43)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위의 보고서, 23쪽.

44)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위의 보고서, 60-61쪽.

적인 선별정책이나 방법을 정하고 있었다.⁴⁵⁾ 이에 6개의 커뮤니티는 Greenbook의 원칙에 따라서 아동보호기관의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학대의 선별·평가의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한 다수의 활동을 하였다. 즉 DV피해자지원기관이나 아동복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에 대한 선별·평가기준을 일관성 있는 명확한 방법으로 정하거나 새로운 선별방법을 제시하였다. 배우자폭력사건에 있어서 아동의 학대유무를 선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제공하였다. 커뮤니티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에 의해 많은 커뮤니티의 아동복지기관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⁴⁶⁾

4.1.1.1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한 가정에서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가 행해진 경우 가해자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동일인의 가해자에 의한 다수의 폭력 행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보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DV피해자지원기관, 아동복지기관, 법원 등은 비밀엄수의 원칙을 준수하여 왔고 각 기관들 사이에 긴장관계⁴⁷⁾가 존재하여 사실상 정보공유에 곤란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각 기관들이 Greenbook의 원칙을 준수함에 따라 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정책 수립과 그 실시가 강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기관과 법원간의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reenbook 정책이 시행되기

45) 尾崎 万帆子, 앞의 논문, 24쪽.

46)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앞의 보고서, 60쪽.

47) 예를 들면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DV피해자지원기관이 아동복지기관에 전달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모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전에는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보공유를 위한 비공식적인 행위만 존재하였지만 Greenbok 정책이 시작됨에 따라 정보 공유 정책을 공식화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보공유에 관한 새로운 정책은 특정한 상황 하에 정보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정보공유정책을 가이드하기 위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커뮤니티는 법원과 가정폭력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포지션을 창조⁴⁸⁾하여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4.1.1.1.1 DV피해자의 안전과 지원

가정 내 배우자폭력과 아동폭력 등의 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의 지원 목적은 가정구성원의 복지를 향상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에 대한 대응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직원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피해자나 그 아동에게 미치는 위협이나 아동의 안전지원의 필요성, DV를 목격한 아동에 대한 영향, 개개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의 필요성, DV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등의 이해가 있다. 둘째 인식된 아동학대를 아동복지기관에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다른 기관의 직원을 같은 시설에 배치하거나 복합적인 대응팀을 구축하는 것이다.⁴⁹⁾

Greenbook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위의 목적의 실현에 근접할 수 있었다. 즉 폭력의 동시 존재를 인식하여 보다 빨리 가정폭력에 대응할 수

48)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The Greenbook Demonstration Initiative(2005), 94쪽.

49) 尾崎 万帆子, 앞의 논문 25쪽.

있었고, 각 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에 관한 각 커뮤니티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Greenbook의 시행 후 아동복지와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과 안정에 대하여 법원관계자의 경우 조금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DV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협력기관의 응답조사에서는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또한 교육 및 가정폭력 동시발생의 대처를 위한 아동복지기관과 DV피해자보호기관의 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⁵⁰⁾ 이처럼 Greenbook 정책의 시행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향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의 경우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에 아동이 있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학대의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아동학대가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 혹은 다른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부족하다. 한 가정에서 복수의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어 DV피해자지원기관, 아동복지기관 그리고 법원의 협력과 사건에 관한 정보공유가 불

50)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앞의 보고서, 60쪽.

가피하다고 하겠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해당 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가정폭력피해자를 원조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아동학대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가정 내에서 폭력이 존재한 경우 만일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것만으로 아동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격형성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경우 아동학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가정폭력의 목적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문에서 검토해본 미국의 Greenbook 원칙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Greenbook 원칙에 따른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의 문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의 외국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다른 가정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우선 가정폭력 중복발생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행해져야 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가정에 대하여 다른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특징상 반복하여 행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존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정폭력의 예방면에서 그리고 피해자 보호면에서 중요하다. 둘째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DV피해자 지원센터, 아동복지기관, 법원 그리고 커뮤니티의 협력을 통하여 각 기관의 결함을 극복하고 가정폭력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

가정에서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배우자폭력피해자는 DV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피해자는 아동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때 수집한 가정환경·가해자정보 등을 각 기관이 공유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공동 세미나 및 합동 직원교육을 통하여 기관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고양시키고, 공동의 원칙을 세워 피해자에게 종합적이고 통일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Greenbook 정책에서는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의 인식을 통하여 DV가 발생한 가정에 아동이 있는 경우 그 학대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의 목격이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검토 시 아동이 이를 목격한 경우도 아동학대로서 보호·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일본의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아동학대의 범위를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경우는 물론 학대를 목격한 경우도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아동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물론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격형성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의 경우도 피해자로서 보호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단 아동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기준을 정하여 아동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요하는 경우로 대상을 좁혀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V. 마치는 말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유형의 폭력과는 달리 반복되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공간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되어 왔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자아내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예가 되고 있는 미국의 Greenbook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Greenbook 정책은 DV와 아동학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크고 작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거친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정의 경우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 지금까지 독립하여 지원해 온 기관들의 협력과 정보공유의 필요성 등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범위를 직접 학대를 받은 경우는 물론 가정폭력의 목격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2012년 8월 31일, 심사(의뢰)일 201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12일)

주제어 : 가정폭력,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피해자보호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2008.
- 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小島 妙子,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の法-アメリカ法と日本法の挑戦-, 信山社出版, 2002.
- 日本DV防止・情報センター,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第4版, 解放出版社, 2008.
- 法務省, 犯罪白書2009, 2009.
- 法務省, 犯罪白書2010, 2010.
- 法務省, 犯罪白書2011, 2011.
- Inger J. Sagatun, *Child abuse and the legal system*, Nelson-Hall Pub, 1995.
- Javad H Kashani/Wesley D.Allan, 조미숙 옮김,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1세기사, 2005.
- Lyn shipway, *Domestic Violence: A Handbook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Routledge, 2004.
-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The Greenbook Demonstration Initiative*, 2005.
- Hon. Diane Kiesel, *Domestic Violence: Law, Policy, And Practice*, LexisNexis, 2007.

Melissa J. Doak,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GaleGroup, 2011.

2. 논문

정혜숙,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83-108쪽.

尾崎 万帆子,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と児童虐待が同時存在する家庭への機関連携施策について”, 常磐大学大学院学術雑誌, 常磐大学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 2008.

3. 기타

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0.

The Greenbook National Evaluation Team, *The Greenbook Initiative Final Evaluation Report*, 2008.

Callie Marie Rennison U.S., “Intimate Partner Violence 1993-2001”,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03: <<http://bjs.ojp.usdoj.gov/content/pub/pdf/ipv01.pdf>>: 검색일 : 2012.8.25.

Janet Carter,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and Youth Violence: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2005 : <<http://www.mincava.umn.edu/link/documents/fvpf2/fvpf2.shtml>>, 검색일 : 2012.8.20.

U.S.Department of Justice, “The Green Book Demonstration”, 2001. <<https://www.ncjrs.gov/pdffiles1/ojjdp/fs200121.pdf>>, 검색일 : 2012.8.20.

[Abstract]

A Strategy to Protect Victims of Spousal Violence and Child Abuse

—Based on the US's Greenbook Policy—

Jan-Di Kim*

A type of group known as family is one of the most basic foundations for a society.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education, raising children, and as a place of rest. However, when there is violence at home, these functions are impeded, resulting in a negative impact on society. Domestic violence can be understood as all forms of violence that occur at home between members of the family including the more typical kinds: spousal violence, child abuse, and elderly abuse.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violence at home, spousal violence and child abuse are thought to be the most serious by this author, which occur frequently. From the early 1980s, when domestic violence started to become an issue, to today, domestic violence has been on an increasing tren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various infrastructures in place for protect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punishing those responsible and despite increasing awareness that domestic violence is a social crime. This paper examines the US's "Greenbook policy," which is serving as a good example for devising ways for actively and efficiently tackling domestic violence. Furthermore, based on the policy, ways to overcome the issues regarding protection of current

* The doctor's course at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Osaka University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e examined, as well as appropriate, active measures to combat domestic violence.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spousal violence, child abuse, the co-occurrence problem in domestic violence, crime victim protection